

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

부분개정사항

(2010. 05)



국토해양부
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

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본 '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'의 부분개정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[2010. 05 개정]

page	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, 2007	개정(안), 2010	비 고
23	<p>2.7 구조</p> <p>【설 명】 (중략)</p> <p>연석의 높이는 배수, 자동차의 보도 진입 억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,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는 수직형 연석을 설치하고,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경사형 연석을 설치한다. 수직형의 높이는 150-250mm로 하고 표준 높이는 150mm로 한다. 교량 및 터널 등에서 시설 구조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250mm까지 높일 수 있으나, 운전자 비상시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높이는 200m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</p> <p>연석의 높이는 자동차의 보도 진입 억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, 지방부 도로에는 100mm 정도의 경사형 연석으로 차도와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.</p> <p>연석의 차도쪽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동차 타이어의 파손을 예방한다.</p> <p><그림 2.14> 는 수직형과 경사형 연석의 형식 사례를 보인 것이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a) 측구겸용 연석 (단위 : mm)</p> <p>b) 연석 (단위 : mm)</p> <p><그림 2.14> 연석 형식</p> </div> <p>(중략)</p>	<p>2.7 구조</p> <p>【설 명】 (중략)</p> <p>연석은 주로 노면배수, 시선유도, 도로용지의 경계,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다. 연석은 도시부 도로에서 보차도 분리 등 횡단구성 요소의 시설로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, 설계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, 지방부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설계속도 80km/h 이상인 도로에서는 경사형 연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</p> <p>(1) 경사형(완경사형) Mountable curb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연석 전면의 경사가 1:1 보다 급하면 포장 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. ② 전면의 경사가 1:1~1:1.2이면 포장 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5cm 이하이어야 한다. ③ 경사형은 필요시(고속주행 구간, 주·정차 허용 구간, 보행우선구역에 설치 할 경우 등) 차량의 바퀴가 연석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④ 가드레일과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연석의 전면은 가드레일의 전면과 일치시키거나 연석을 가드레일보다 약간 후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<p>(2) 수직형 I(급경사형), 수직형 II(직사각형) Barrier curb I, II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. ② 저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이탈을 방지한다. ③ 고속주행시 바퀴가 연석에 충돌하면 차량이 전복되므로 속도가 높은 도로에는 부적합하다. ④ 저속주행에도 차량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드레일과 병행하여 설치한다. ⑤ 차도에 접하여 옹벽이 설치되거나 터널 내부에서 충분한 길어깨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연석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. <p>연석은 그 형상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, 그림 2.14는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.</p>	

page	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, 2007	개정(안), 2010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149 277 1868 627"> <thead> <tr> <th>설치위치 / 연석종류</th> <th>경사형 (완경사형)</th> <th>수직형 I (급경사형)</th> <th>수직형 II (직사각형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</td> <td>◎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연석</td> <td>◎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경우</td> <td>◎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</td> <td>◎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</td> <td></td> <td>◎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</td> <td></td> <td>◎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1. ◎ : 일반적 적용 형식 주2. ○ : 도로여건에 따라 사용가능형식</p> <div data-bbox="1149 639 1868 99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측구검용 연석 (단위 : mm)</p> <p>(a) 경사형 (완경사형) (b) 수직형 I (급경사형) (c) 수직형 II (직사각형)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그림 2.14> 연석의 형식 예</p> <p>연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.</p> <p>우천시 보행자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경우에 사용하는 연석의 상단 마찰력은 40BPN 이상을 가져야 한다.</p> <p>(중략)</p>	설치위치 / 연석종류	경사형 (완경사형)	수직형 I (급경사형)	수직형 II (직사각형)	연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	◎			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연석	◎			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경우	◎			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	◎			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		◎		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		◎	○	
설치위치 / 연석종류	경사형 (완경사형)	수직형 I (급경사형)	수직형 II (직사각형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	◎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연석	◎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경우	◎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	◎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		◎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		◎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